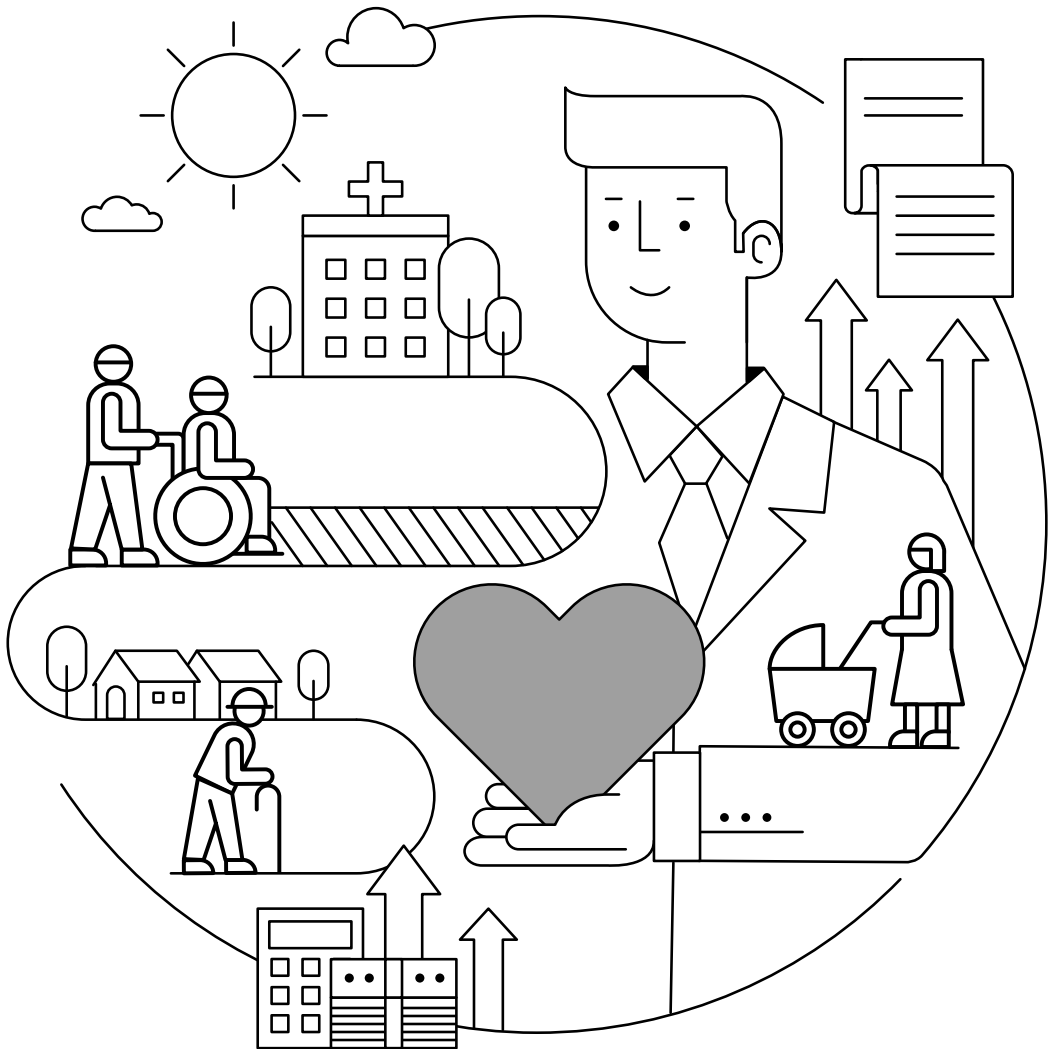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목 차

I	개요		
	1. 추진배경	1
	2. 지원개요	1
	3. 업무 프로세스	2
II	대상자 신청 및 선정기준		
	1. 기본 원칙	3
	2. 용어 정리	3
	3. 상담 및 신청	3
	4. 보장의 단위	5
	5. 선정기준	7
III	조사 및 보장결정		
	1. 조사 원칙	9
	2. 소득 조사	10
	3. 재산 조사	11
	4. 부양의무자 조사	13
	5. 보장결정	14
IV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관리		
	1. 근로능력판정	15
	2. 근로능력 변경처리	17
V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18
	2. 위원회 기능	18

VI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종류	20
2. 급여별 세부내용	20
3. 급여의 지급	21
4. 급여의 변경·중지	22
5. 주거급여 전환자에 대한 이행특례	22
6. 계좌 관리	23

VII 자격관리

1. 변동 및 사후관리(확인조사)	24
2. 재신청 조사(일제조사)	24
3. 근로능력가구의 사후관리	25
4. 보장비용 환수	26

VIII 서식

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29
1-2.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	30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 (변경·중지·대상제외) 통지서	31
3.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33
4.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34
5.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생활실태조사서	35

IX 부록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경과	36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39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9년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43% 이하**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 43%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3,084,841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18년 대비 2.09%인상, 재산기준 5억 ⇒ 6억**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613,536	5,813,056	6,666,560	7,520,064	8,373,568	9,227,072	10,080,576
재산기준	6억원						

● **생계급여 : '18년 대비 2.09%인상**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56,051	435,979	564,005	692,031	820,056	948,082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생계급여	85,350	145,326	188,002	230,677	273,352	316,027

● '19년 주요 개정내용

연번	구분	2018년	2019년
1	서울형 기초보장권자(3p)	〈신설〉	· 단, '18. 9. 30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인 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1년에 한해 지급 받을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2,8p)	· 가구당 5억원 이하 · 5억원	· 가구당 6억원 이하 · 6억원
3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대상(8p)	〈추가〉	(국민기초보장제도 '19.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조치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가구 특성 고려 대상 - 부양의무자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구 특성 고려 대상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
4	부양의무자조사(13p)	〈추가〉	· 부양의무자가구 특성 고려 대상 - 부양의무자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구 특성 고려 대상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
5	주거급여 전환자 한시적 차액보전	〈신설〉	5. 주거급여 전환자에 대한 이행특례
6	이행기 보전액(22p)	5. 이행기 보전액 지원	〈지원종료로 인한 삭제〉
7	서식 1~3(31p~35p)	〈서식수정〉	· 부적합 → 대상제외 · 부적합한 것으로 →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8	부록2(39p)	〈추가〉	· 2018년 추진경과 추가

I. 개요

1. 추진 배경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 중앙정부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어 주거비 등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시민은 맞춤형급여 수급자 선정, 복지급여 수준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 발생
-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상담 및 신청
 - 희망하는 복지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서·동의서(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조사
 -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택 불가
 -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 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6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해산·장제급여 : 맞춤형 수급자와 동일 수준

3. 업무 프로세스



※ 별도의 업무분장이 된 경우 업무 분장한 바에 따라 추진

II. 대상자 신청 및 선정기준

1. 기본 원칙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의 병행 신청·조사에 따른 각종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2. 용어 정리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
 - 단, '18. 9. 30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인 자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1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거 지원 대상자로 보장이 결정된 자

3. 상담 및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 보장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 보장권자 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신청과 동일, 별도 양식 없음)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다.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상담을 통해 신청가구에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등 타 복지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제출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부양의무자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 원칙
 -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급여 통합 신청으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시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동의서’ 제외 가능(※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서식은 신청 하여야 함)
- 기타 타급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 필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일괄 신청·접수

-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맞춤형급여 통합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병행 접수
 - 단, 현재 타급여 지원대상자(기초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연계신청 생략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26)’에 의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절차 안내 및 직권 신청 실시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하여 적합 여부 판정
 - ※ 단, 부양의무자 조사없이 주거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필요

○ 신청기준

-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 '17년까지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1개월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하는 관계로 '18년부터 시 의무거주기간 삭제함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선택 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 보호)

○ 동 주민센터 접수 후 자치구로 송부

4. 보장의 단위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의 범위 준용 함
 -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세대주의 서울시 전입 주민등록일 확인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별도가구 특례 인정¹⁾
 - 부모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및 결혼한 자녀(사별 또는 이혼한 자녀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는 별도 가구 인정
- ⇒ 분리된 가구는 부양의무자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충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에서 별도가구로 인정받은 경우 나머지 비수급 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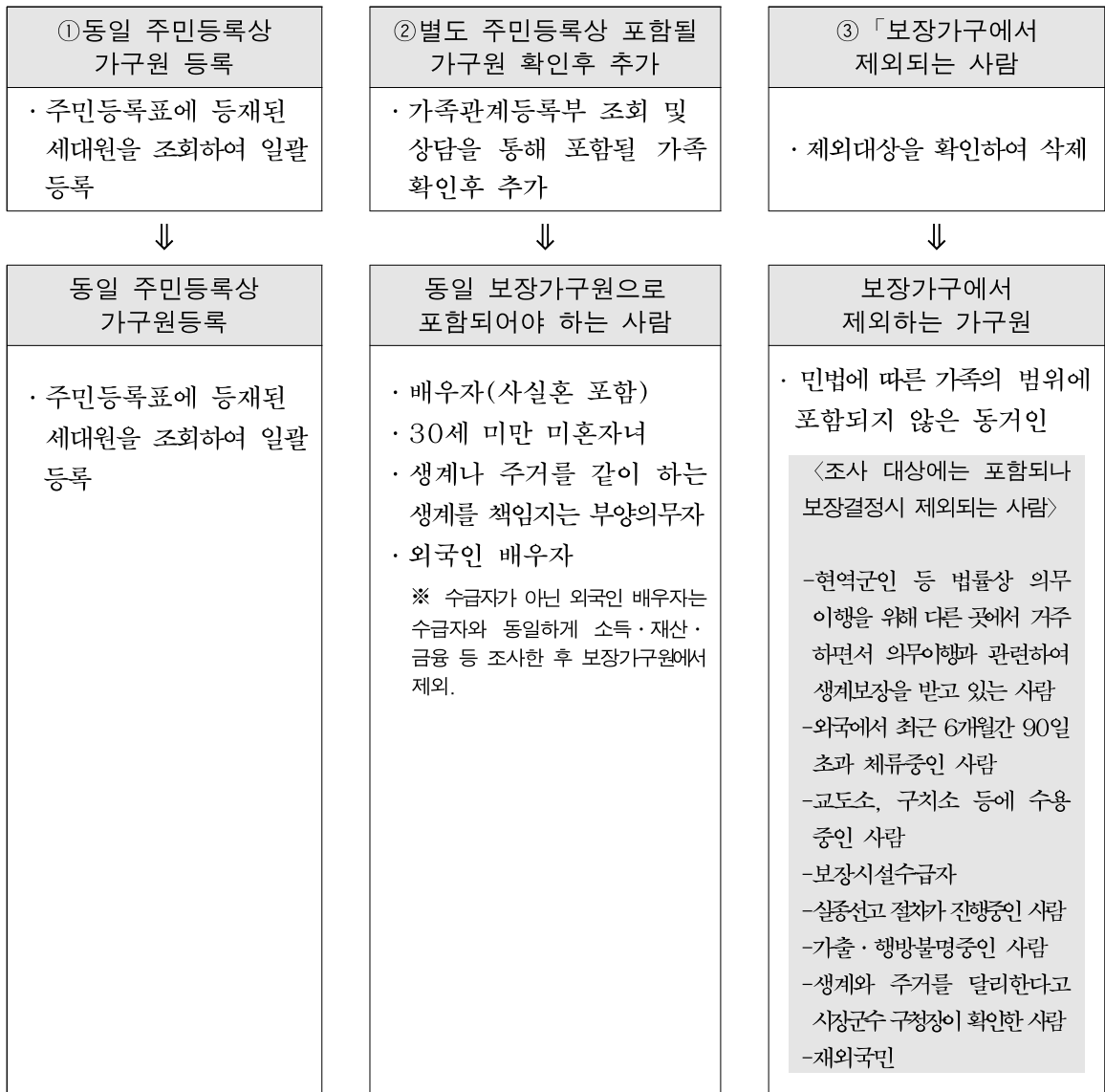
1) 보장가구에서 별도가구 특례는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구에 한하여 인정함

- 단, 연령과 관계없이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형제자매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별도가구 인정
- 동일 보장가구의 세대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동일 보장 가구로 인정
- ※ 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함

○ 가구 구성처리 방법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및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가구구성 처리절차 〉



5. 선정기준

○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 43%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3,084,841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에서 6인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 그 외 소득의 인정 여부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사방법 준용

○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 1억3천5백만원²⁾ 이하(일반재산+자동차³⁾ + 금융재산 - 부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 선정 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대상자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함

2) '19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3)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사기준 준용, 감면·일반재산 적용 자동차는 차량가격으로 일반재산에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대상 】

〈기존〉

◆ 수급가구

- 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1~3급,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법 제5조의 대상자)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에 한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단, 20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 *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및 등록 장애인 가구는 가구소득 하위 70%이하인 가구 해당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구 제외 대상과 동일 함)
- 한부모가족은(17년부터 시행) 전 배우자(이혼)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추가〉 : 국민기초보장제도 '19.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조치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가구 특성 고려 대상

- 부양의무자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구 특성 고려 대상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

- 부양의무자 능력 없음 판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가구 규모(인원)에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 규모 동일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⁴⁾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613,536	5,813,056	6,666,560	7,520,064	8,373,568	9,227,072	10,080,576
재산기준	6억원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이거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적자료만으로 판정 (전·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4) 2인 대상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Ⅲ. 조사 및 보장결정

1. 조사 원칙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 근로능력 판정⁵⁾은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II. 근로능력 판정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P119~120)
 - 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함
 - ※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므로 근로능력판정 유무대상에서 제외함. 즉,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나머지 가구원이 근로능력이 없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책정 가능함
- **근로능력상태 변경(능력→무능력)**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책정후 근로능력상태 변경시(능력→무능력) 증빙서류(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로무능력 판정가능하며, 심의시 보호기간 설정하여 심의토록 할 것
 - 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판정결과 근로능력 없음(유→무)으로 변동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변경 가능
 - ※ 단, 진단서는 제출시 1개월내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 근로능력 판정 유예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간 미개최로 인하여 자격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의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함. 단, 결정시까지 자격 중지는 유예 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5) 근로능력여부 판정은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판정결과 반영

-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 담당이 일괄 실시하고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소득·재산의 변경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 수정 조치
- 신규 신청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자활사업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만 신청하는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제한

❖ 타 법령에 의한 수급자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되, 동일(유사)한 지속성 생계형 급여⁶⁾는 소득으로 산정 함 단, 단기간(3개월내) 긴급성 복지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2. 소득 조사

- 선정 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text{소득평가액}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산정하지 아니함
 - 행복e음 등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만 반영하되,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사실을 확인할 것
 - ▶ 정기적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

6)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중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는 생계성 급여로서 소득으로 산정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가능

-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기타 사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적이전소득(111쪽~116쪽)을 말함

-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이자소득(예금·주식·채권 등)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 단, 이자소득 발생 규모로 보아 보장가구의 소득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사실 확인후 변동된 소득 및 재산으로 반영
- 기초연금 소득은 연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적용('18. 10월부터 적용)
- 그 외 소득 조사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3. 재산 조사

-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
- 재산가액 선정 기준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하되, 변경내용이 증빙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 수정 가능
- 금융재산의 산정 제외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 산정에 포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제한
 -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 시에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 불가
 - ▶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
 - 자동차 재산기준
 -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과 동일함

나.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 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율 월 4.17%를 적용을 준용함

※ 기타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을 준용함

○ 기타 산정 재산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재산조사시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재산조사 시 동일 적용
- 단, 보장가구의 3개월내 처분한 재산은 필요시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생활실태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 재산 조사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 명의대여 재산은 불법사항이므로 재산공제 불인정
- 기본재산액 공제는 미적용
- 부채 차감 순서
 - 1순위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자동차 포함)
 - 2순위 금융재산
- 단, 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부채차감 순서(일반재산→금융재산)에 따라 부채를 차감할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중지)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감 순서 변경 가능

4.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 부양의무자 중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자의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전 배우자(이혼)는 부양의무자 기준(조사)을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대상」(8쪽 참고)은 부양의무자 기준(조사)을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기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 발생 시 적극적 발굴 지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부양의무자가 동의서 등을 미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 추진
 - 맞춤형급여 신청·조사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여 보장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적극 활용

- 처리원칙

-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조사상 필요한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부양 거부·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징수 가능하되 부양의무자의 공적 자료는 조회 실시

- 보장기관은 ① 신청자의 소명서와 ② 조사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 보고 및 ③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우선 결정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여 보장 결정한 가구는 보장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토록 함

※ (예시)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 거부·기피하는 가구가 있더라도 그 외 다른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보장 부적합 결정으로 처리되어 부양의무 거부·기피 가구에 대한 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 조사 시 사실 확인하여 선보장 후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3개월 이내)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2~175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각종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라도 공적자료 조회 후 지방생활보장심의회 심의를 거쳐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

5. 보장결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 여부와 급여액·서비스 내용 결정
 - 근로무능력가구, 근로능력가구로 구분하여 급여 지원
- 근로능력가구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장기간 제한 : 3개월, 연 1회
 - 3개월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가구의 생활실태 확인 조사결과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3개월 연장 가능(최대 6개월 보호)
-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원칙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IV.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관리

1. 근로능력판정

- 조사방법 : 근로능력 판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 자격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구분
 -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페이지 93-94(가.)쪽 참조
- 근로능력판정

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19년 기준 만 18세(2001년생) 생활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9년 기준 만 65세(195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현행 2급이상)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19.6.30일까지만 유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8-203호)’ 별표2의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2018-224호)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 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 평가 유예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확인
 - ▶ 신규 급여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 ※ 단,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HIV/AIDS,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신청 시에만 ‘일반 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자 확인 방법 》

- (기존수급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확인 후 특례 등록자인 경우 근로능력평가 유예
- (신규 수급권자)건강보험공단(지사)에 산정특례등록여부 확인하여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 처리

※ 「의료급여 사업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참고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65쪽)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 참조

다. 기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지무요원, 상근 예비역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함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완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 판정

2. 근로능력 변경처리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책정후 근로능력상태 변경(능력→무능력)

- 병원 “일반 진단서” 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로무능력 판정가능

※ 단, 진단서는 1개월내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하며, 질병 등의 진단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의 협조를 받아 판단

- 다만, 근로능력에서 무능력으로 변경시 “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무능력자 처리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책정후 근로능력가구 연장보호(3개월→6개월)

- 근로능력가구 연장보호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조사서(서식 제5호)를 통해 연장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보호 가능

- 생활실태조사서에 가구구성원, 근로능력 유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건강상태(질병유무), 주 소득원 및 월 수입액, 월 지출액 등 조사

※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판단

- 연장보호 심의대상

- 실업이나 미취업 등으로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학원 수강 등으로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경우
- 동일 보장가구내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일시적인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V.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 구성

- 서울형 기초보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등)는 별도 구성없이 자치구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별도위원회를 이용함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등이 대체 가능

○ 운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안건이 발생시)하며, 필요시 서면의결을 활용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서울형 기초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개최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등) 심의실적을 별도로 기록관리 할 것

⇒ 기타 위원회 개최 및 운영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위원회 기능

○ 기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조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실상 재산이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조사결과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판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부채차감 순서(일반재산→금융재산)에 따라 부채를 차감할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 가구특성이나 생활 실태로 보아 수급자 가구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징수제외(감액포함) 및 결손 처분에 관한 경우
- 보장 가구내 장애 아동(만 18세미만) 및 치매 노인을 간병·보호해야 할 경우 가족 구성원 1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하는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이혼전 숙려기간 포함)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주거를 달리고 있는 경우

Ⅵ.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 급여별 세부내용

- 생계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 방법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0.23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⁷⁾

〈 가구규모별 최대지원액과 최소지원액 〉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56,051	435,979	564,005	692,031	820,056	948,082	1,076,107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3,084,841
	생계급여	85,350	145,326	188,002	230,677	273,352	316,027	358,702

- 급여 개시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중지자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경우,
 - ▶ 중지일이 포함된 달 기간 중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면 중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하며,
 -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급여가 중지된 달에 생계급여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서울형 급여개시일 준수('18년~)
 - ▶ 중지일이 포함된 달을 경과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급여 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함

7) 계수 = {(1인가구 최대 급여액 - 1인가구 최소 급여액) / 1인가구 최소 소득평가액}

☞ 계수는 1인 가구가 다수이며 지원대상자에 가장 유리하므로 가구규모 상관없이 적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계속 보호
 - ▶ 맞춤형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급여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법정기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이중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

- 급여 지급기준

-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하되, 급여지급 기준일을 초과하여 선정된 가구는 그 다음달에 소급하여 2개월 분의 급여 지급
- 근로능력가구의 급여는 보장기간(기본 3개월~ 최대 6개월)으로 한정

- 그 외 급여 지급기준은 맞춤형급여 수급자 급여기준 준용

○ 해산급여

-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75만원

☞ 해산·장제급여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3. 급여의 지급

○ 급여 기준일(매월 15일) 및 지급일(매월 25일)

○ 지급방법 : 행복e음 연계 처리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급여 지급자료 생성
- 급여액을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e-호조를 통해 지급 의뢰하여 급여 이체 및 지급

※ 타 법령에 의한 수급자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되, 동일(유사)한 지속성 생계형 급여⁸⁾는 소득으로 산정 함 단, 단기간(3개월내) 긴급성 복지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8)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중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는 생계성 급여로서 소득으로 산정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가능

4. 급여의 변경 · 중지

- 변경 사유 :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 가구원 · 거주지 변동 등
- 변경 내용 : 보장구분, 급여액 등
- 변동사항 적용 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급여 중지
- 근로능력가구의 보장기간 경과(3개월~최대 6개월) 시 급여 중지
- 급여가 중지된 경우 급여지급 기준
 -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
 - 단, 부당·부정 수급으로 급여가 중지된 경우 중지가 결정된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중지
- 변경내용 및 중지내용을 서면 통지 원칙 <별지 제2호 서식>
- 타 법령에 의거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이중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복지급여 환수 조치

5. 주거급여 전환자에 대한 이행특례

- 이행특례(차액 보전)급여의 지급대상
 - '18.9.30.이전 서울형기초보장으로 지원받던 수급자가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조치로 인해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전환된 후 기존 지원받던 서울형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의 차액을 가구당 최대1년 이내 지원(감소시에만 지원)
 -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권리로 보장하는 “급여”가 아님
 - ※ '18.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 특례 수급자는 장제·해산급여 미지급(맞춤형급여에서 지원)
 - 근로능력없는 수급자만 해당
 - (임차급여)현재 지급하는 서울형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 공제 후 차액 지원하여 소득 보전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중 현물급여 대상가구의 경우 전액 보전

- **이행특례(차액 보전)급여의 지급중지**
 - 확인조사를 통한 소득초과 등으로 인해 주거급여 탈락시 차액보전은 중지되고, 희망시 통합급여 신청과 함께 서울형 기초보장 재신청
- **이행특례(차액 보전)의 종료**
 - 기존('18.9월이전 책정)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전환자에 대한 이행특례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 후 1년간 유지 하되, '19년말 지급 종료조치 ※ 지급 개시·종료시 안내문 발송
- **상세 시행 지침은 별도 시행 공문 참조**

6. 계좌 관리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며, 급여계좌 수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수급자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인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 3자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급여지급 가능**
 -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혼전 숙려기간 포함)에 있다고 확인한 경우
 -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주거를 달리고 있다고 확인한 경우
 -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II. 급여의 지급 4 계좌관리 나. 급여 계좌 예외(P227~228) 준용
 - ※ 제3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이외의 자를 말함
- **장제급여는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
- **급여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계좌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VII. 자격관리

1. 변동 및 사후관리(확인조사)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자격 유지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
 - 출생·사망 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감소)이 없는 가구원 변동 시에는 전체(잔여)가구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평가액을 재산정하고, 결혼 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증가)이 있는 가구원 변동 시에는 맞춤형급여 통합신청을 새로 받아 재판정 실시
- 확인 방법
 - 일반적인 확인 : 신고 및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 행복e음을 통한 확인⁹⁾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로 선정하여 사후관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사후관리
 - 타급여(기초연금 등) 확인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재신청 조사(일제조사) 제외자는 보장가구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자진 신고토록 연 1회 이상 안내문 발송
-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변동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월 기준으로 적용 함
 - 행복e음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재신청 조사(일제조사)

-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 변동 등을 확인·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2년 마다 재신청 조사(맞춤형 급여와 병행 신청)

9) 각 항목별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재신청 조사방법

- 조사시기 : 자치구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이상 실시
 - ※ 향후 재신청 조사(일제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계획 및 안내문 등은 별도 공문 시행예정('19. 4월중)
- 적용대상 : 보장결정 후 재신청 조사(일제조사)없이 2년 이상 수급자격 유지자
 - ※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유예 대상자 예외없이 2년 이상 자격 유지자는 모두 적용
- 방 법 : 적용 대상자를 상·하반기로 분류하여 조사
- 추진방법
 - 방 법 : 재신청 조사 안내문을 수급자 가구에 반드시 발송(전화 및 방문안내 포함)하여 재신청 조사(맞춤형 급여와 병행 신청)
 - ⇒ 신청 안내 2회(안내문 발송 1회 포함)이상 불응시 수급자격 중지
 - 기 타 : 그 외 조사방법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처리
-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
 -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맞춤형 급여(의료·주거) 수급자는 자격을 중지하고, 보장비용 환수 제외(단, 중복 지급된 생계급여는 환수)
 - 자격 중지자는 확인 후 익월부터 자격정지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3. 근로능력가구의 사후관리

- 가. 근로능력가구의 보장기간은 3개월, 연 1회(직전 급여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로 제한
 - 단, 보장가구의 생활실태 조사·확인결과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3개월 연장 가능(최대 6개월 보호)

예) 2018.11. 1 급여신청, 2018.11.20 “근로능력가구” 보장결정

* 보장기간은 3개월(2018.11.1~2019.1.31), 급여 재신청은 2019.11. 1 이후 가능

구 분	보장기간(3개월)	재 급여신청일
근로능력가구	2018.11. 1 ~ 2018. 1.31	2019. 11. 1 급여 재신청 가능

나.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처리방법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유효기간이 만료 도래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무능력 판정시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근로무능력 상태 유예(유예기간은 최대 1년)

※ 수급자 여건에 따라 유예 기간은 1년 이하로 조정 가능

※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만료 재도래자는 재신청조사(일제조사) 대상임을 유의할 것

▶ 2년이상 수급자격 유지자는 근로무능력 유효기간에 대한 남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일제조사 대상이므로 자치구에서 유예기간 연장 판단시 유의할 것

- 근로무능력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거나,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진단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상태를 “있음”으로 변경하여 3개월 지원 후 보장 중지

※ 단, 2년 이상 자격 유지자인 경우 근로능력 상태 3개월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신청 조사 대상임

4. 보장비용 환수

○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환수) 절차

- 부정수급에 대하여 담당자가 인지한 경우 행복e음 내 “환수 상계처리” 부정수급으로 등록한 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시 상계처리 또는 환수 조치

※ 부정수급 징수(환수) 절차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운영규정)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 조사기간(30~70일)을 감안하여 조사결정 전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는 우선 지원
 -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중 지원된 급여에 한하여 환수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에서의 생계급여 환수 조치

단,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환수 면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②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서울형 기초보장에서의 생계급여 미환수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된 해당 급여에 한하여 환수 조치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는 소득평가지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않음

⇒ 기타 보장비용 징수 및 결손처분 절차 등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VIII. 서 식

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1-2. 부양의무자 정보이용 동의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3.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4.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서

5. 서울형 기초보장 생활실태 조사서

별지 제1-2호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세대주와 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00 구청장 귀하

제출하는 곳

관할 동 주민센터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 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구청장

직인

별지 제3호

복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해산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사산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체)서비스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급여 지급 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p>위와 같이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에 대하여 계좌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생활실태조사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조사대상 집주소 등 기재		
4. 조사목적			
5. 조사내용	*가구구성 형태 및 근로능력 유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건강상태(질병 유무), 주 소득원 및 월 수입액, 월 지출액 등 조사내용 포함		
6. 조사결과			
7.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IX. 부 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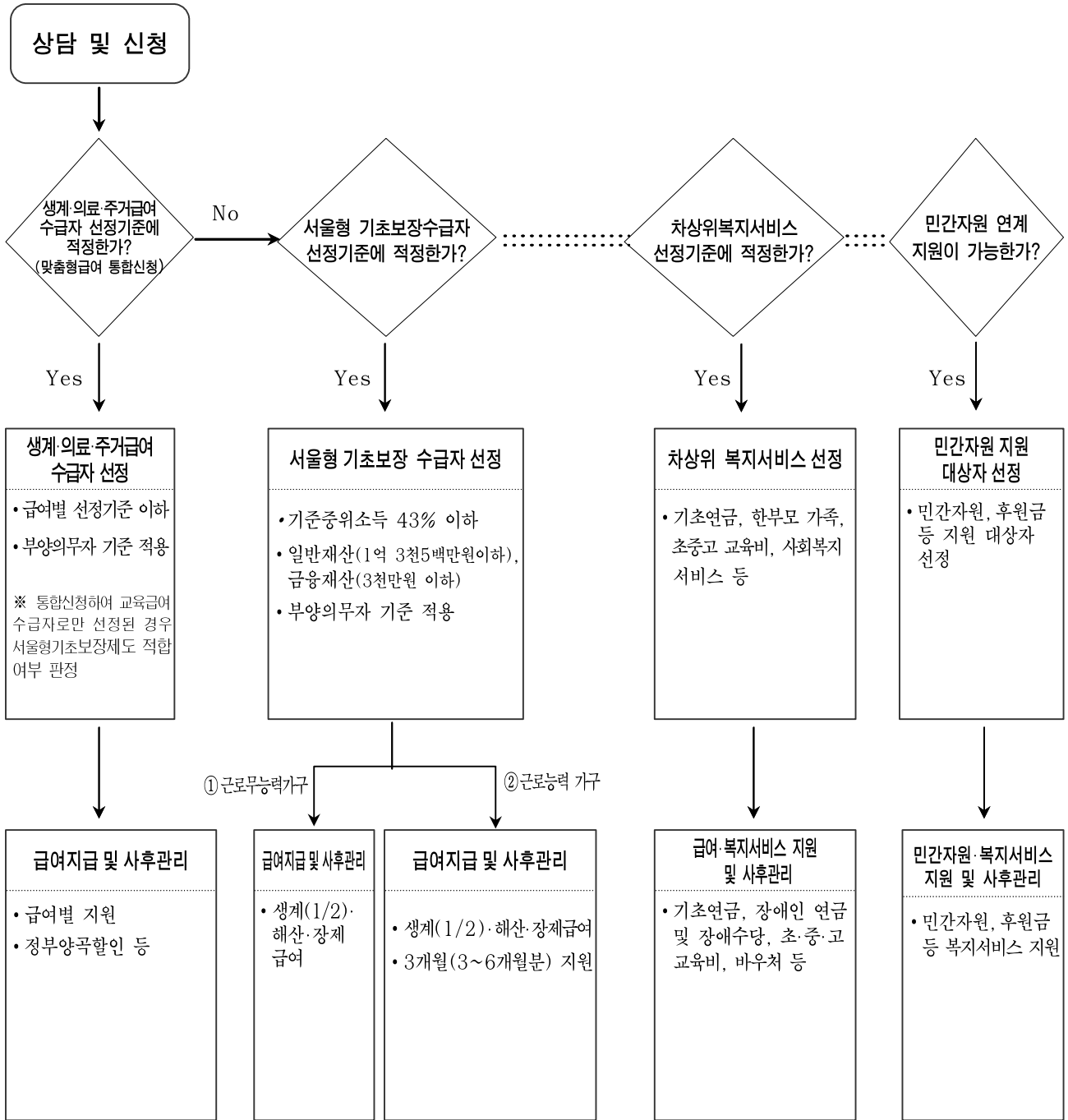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추진 경과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착수 : '12.2월
- 서울시민 복지기준 대시민 발표 : '12.10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 : '13.1.8
-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운영 : '13.1월~
 - 전문가, 시민대표, 중앙정부, 시·자치구 직원 등 각 10명 내외 참여
 - 자문 및 실무위원회 개최 : 총 9회(자문 5회, 실무 4회)
 - 이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잠정 확정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용어 정의,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수준 등 규정 신설
 -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포('13. 4.11)
- 자치구 시범 운영 추진 : '13.5월~6월
 - 4개 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화 추진
 - 행복e음 내 “지자체 서비스”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반영 및 기능개선 추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13.7.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인력 지원 : '13.6월~12월
 - 조기상담 및 조사인력, 구·동 복지현장 지원인력 등 747명 3,027백만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13.10.10~
 - 금융재산 기준 : 5백만원 이하 → 10백만원 이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 인정 등
-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14.1.1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0% 이하 → 최저생계비 68%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13년 대비 약 5.5% 인상
 - 생계급여 : 가구규모·소득구간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5천원 인상/월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대책」에 따라 선정기준 완화 : '14.4.2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8% 이하 → 최저생계비 80% 이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 : '14.5.26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적용, 자치구 전산오류 등 SR 발생 조치 등
- 서울시민 복지기준 목표 조기 반영 : 2016년 목표 2015년 시행
 - 신청가구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80%이하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2015년 최저생계비(2.3%) 인상 반영
 - 신청가구의 소득기준 및 생계급여액,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인상
 - ※ 신청가구 소득기준 28% 인상 효과 : 821천원 ⇒ 1,051천원(↑ 230천원, 2인 기준)
-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 '15.2월
 - 맞춤형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제도개편 방향 논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정책연구 진행(서울연구원) : '15.2~9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15.4.3~12.31
- 맞춤형 시행에 따른 서울형 전산시스템 테스트(정보개발원) : '15.6.24
-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우선적용 추진 : '15.7.1
 - 소득기준 변경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2인 기준 : (기존) 1,051,048원 → (변경) 1,064,078원
 - 제한대상 : 기초 수급자 ⇒ 맞춤형 급여 수급자(생계, 의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후관리 체계 구축 추진
 - 보건복지부 관련부서(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기초생활보장과) 사전협의('15.6.13~24) 및 업무협조 공문 발송('15.6.27)
 -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 검토 회의(보건복지부, '15.7.1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실무위원회 검토 회의 : '15.7.2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자문위원회 검토 회의 : '15.7.29
-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기능개선 용역 추진 : '15.7월~12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추진 : '15.10.9
 - 제한대상 :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가구 선정기준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 : 현행 유지하되 기준중위소득 반영
 - ※ 2인 기준 : (기준) 4,939,925원 ⇒ (변경) 5,001,168원
 - 부양거부, 기피 등 확인 시 선보장 후심의
 - 교육급여 지원 폐지 : '15.12.31. 급여 폐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4.0%) 인상 반영 : '16.1월
 -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인상
 - ※ 신청가구 소득기준 : 1,064천원 ⇒ 1,107천원(↑ 43천원, 2인 기준)
 - 급여지원 방식 변경 : '16. 1월
 -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 '15. 4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 반영, 구간별 소득 역전현상 해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개선 : '16.8월
 -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3건→11건)
 - 2017년 기준 중위소득(1.7%) 인상 반영 : '17.1월
 -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인상
 - ※ 신청가구 소득기준 : 1,107천원 ⇒ 1,126천원(↑ 19천원, 2인 기준)
 - 2017년 생계급여 5.2%인상하여 보장성 강화 : '17.1월
 - 기준 중위소득은 '16년 대비 1.7% 인상하여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반영
 - 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및 자격관리 강화 : '17.1월
 - 수급자격을 2년이상 유지하는 보장가구는 매 2년마다 재신청조사 실시 등
 - 2018년 기준 중위소득(1.16%) 인상 반영 : '18.1월
 -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인상
 -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18.1월
 - 수급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7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18년)로 완화

부 록(2)_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 차상위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노인복지(기초연금)
- 초·중·고 교육비 지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 한부모가족(교육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이용권(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